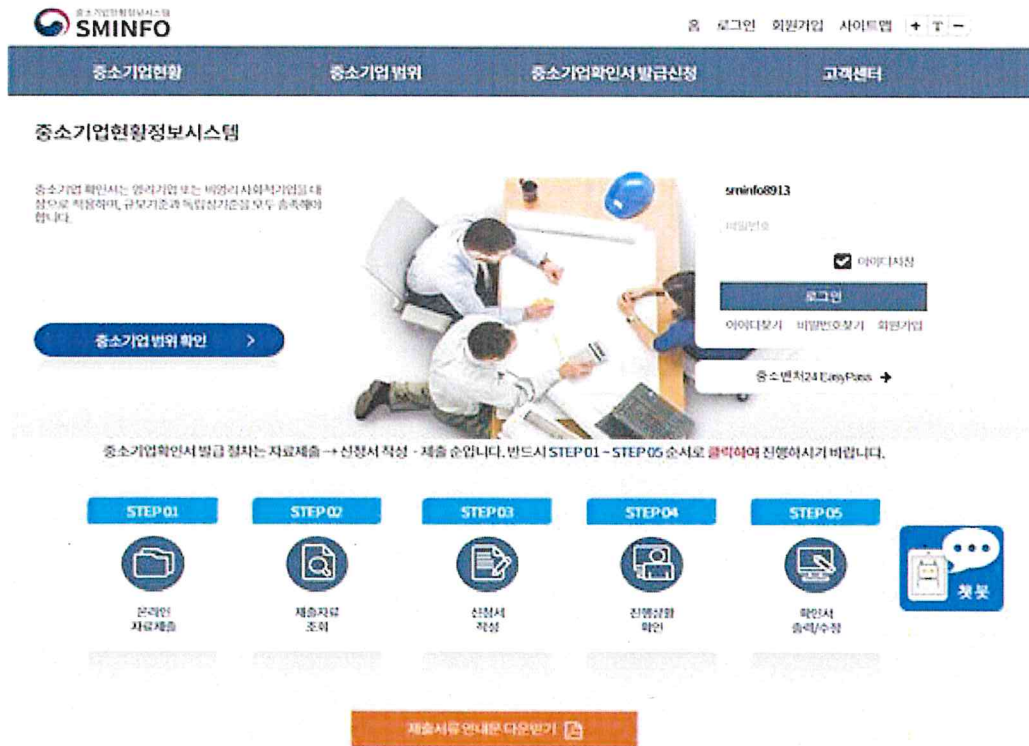


2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·방법

- 발급 사이트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://sminfo.mss.go.kr>)



- 발급 절차



- * 관계기업 보유기업은 지방청에서 서류검토 후 발급
- * 소상공인 유예대상 기업은 '과거 규모확인 절차' 진행 후 확인서 발급 가능

- 제출서류

- ① 법인기업 :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자료,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
- ② 개인기업 :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, 최근 1개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,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

※ 위 사항은 기업과세에 따라 발급절차 및 제출서류 상이할 수 있으니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메인 화면에 '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'를 통해 기업의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